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서론

유교적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1920년대에 소파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한 아동애호 사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과 어린이 헌장의 제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입법화 등을 통해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또한 그 권리를 보장하려는 아동권리 사상은 서구사회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서구사회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사상은 1922년에 애글랜타인 잭(Eglantyne Jebb)이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주창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5개조로 된 이 선언문은 국제연맹에 의해 1924년에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으로 채택되었다. 1959년에 유엔은 전문 10개조로 된 ‘아동의 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9년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는 2000년대를 향한 인



韓 忠 吉

보건복지부 기술협력관

1924년 9월 26일 국제연맹에 의해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은 어린이들의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류사에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 협약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주요 내용

가. 유엔 아동권리선언

1924년 9월 26일 국제연맹에 의해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은 어린이들의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두 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린이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②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발달이 늦은 어린이는 도움을 받아야 하며, 빛나간 어린이는 교화되어야 하며, 고아와 부랑아는 수용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어린이는 위험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구조되어야 한다.
- ④ 어린이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하며,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⑤ 어린이는 그의 재능이 인류를 위해 쓰여진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덧붙여 1948년에 개정 선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59년 11월 20일에는 세계 7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어린이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사상, 국적 또는 사회적, 경제적 출신에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②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법이나 여타의 수단에 의해 이를 위한 기회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③ 어린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이 주어져야 한다.
- ④ 어린이는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그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받아야 한다.
- ⑥ 어린이는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한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하며, 가능한 부모의 책임하에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하에 양육되어야 한다. 가정이 없거나 적절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보호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다.
- ⑦ 어린이는 최소한 초등학교 수준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⑧ 어린이는 모든 상황에서 제일 먼저 보호되고 구출되어야 한다.
- ⑨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방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⑩ 어린이는 인종, 종교, 기타 어떤 형태의 차별하의 양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문과 54개 조로 되어 있는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② 발달의 권리: 교육·놀이·여가·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87개국이 비준함으로써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국제협약의 기록을 갖고 있다.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③ 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④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은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아동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의사표시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제협약의 이행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가.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1989년에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 9월 2일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 9월 25일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1996년 현재 187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국제협약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항을 유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837조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면접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협약 제21조 가항의 ‘입양의 절차’로서 협약은 관계당국

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 869조, 878조, 호적법 66조).

셋째, 협약 제40조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534조).

협약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협약의 제44조에 따라 1994년 11월 8일 제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민간단체에 의해 제출된 비정부기구 국가보고서를 참조해 1996년 1월 18~19일 이틀간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다.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정부측 대표는 협약 비준시의 유보사항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였고,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이 1992~1996년의 제7차 사회경제개발 계획에 포함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정책과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이에 따른 여러 의무를 지니게 된다. 특히 협약 비준시 3개 조항을 유보한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유보 조항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1) 정부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협약의 일부 유보사항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련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부모-자녀의 분리시 부모의 자녀 면접권(민법 837조)에 상응하는 아동의 부모 면접권(협약 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 3) 부모의 이혼시 양육과 친권에 관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시권(가사 소송규칙 100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 4) 입양에 있어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결정권(협약 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 5)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시 유보한 3개 조항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관계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법의 관련조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방지법 및 아동학대방지법 등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
- 6)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법에서의 조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7)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에서의 아동노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 8) 국제결혼한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협약 7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생지주의 국적법을 고수하는 나라 출신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날 경우 무국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복지와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9) 아동의 미디어 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아동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0)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유해한 완구 등 아동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11) 가정환경을 상실한 소년소녀가장가정에 대한 생활보호, 감독, 지도 등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하며,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가정탁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